



연세대학교
미래교육원

2024학년도 2학기 미래교육원 교육안내



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이윤재관 101호
Tel. 02-2123-3580~6 F.02-2123-8664 E. future@yonsei.ac.kr
<https://go.yonsei.ac.kr/> 카카오톡채널: 연세대 미래교육원

■ 2024-2학기 학사일정

8월	8월 5일(월) ~ 23일(금)	2학기 수강신청
	8월 5일(월) ~ 30일(금)	수강료 납부기간
9월	8월 31일(토) ~ 9월 5일(금)	과정별 개강 및 수강신청 변경 학생증 및 정기주차 신청
	9월 14일(토) ~ 18일(수)	추석연휴 휴강
10월	10월 3일(목)	개천절 휴강
	10월 9일(수)	한글날 휴강
	10월 12일(토)	본교 논술고사일 휴강
11월	11월 25일(월)~30일(토)	과정만족도 설문조사
12월	12월 2일(월) ~ 27일(금)	겨울학기 수강신청
	12월 13일(금) ~ 21일(토)	과정별 종강

* 과정별 개강 및 수강신청 변경 : 2024. 8. 31.(토) ~ 9. 5.(금)

- 수강과정 변경 및 취소는 책임강사 상담 후 1층 행정실에 방문 신청

■ 수료

가. 전체 수업일수 2/3(15주 중 10주 이상) 출석 시 연세대학교

총장과 미래교육원장 공동명의로 수료증 발급

나. 2학기 이상 이수 시 수료증 발급과정

2학기	글쓰기지도사, 심리상담사, 영어독서지도전문인, 스포츠재활클리닉, 보테니컬아트, 식물세밀화과정, 가죽공예전문가[마스터]
3학기	영상음악전문가

다. 교육과정 수료후 증명서 발급은 미래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>

마이페이지에서 증명서 출력 가능

■ 강의장 내 WIFI 이용

WIFI 검색 > 강의장 호수 선택 > 비밀번호 Yonsei1885 입력

■ 도서관출입증 발급 및 이용

- 가. 신청기간: 첫 수업일에 발급 신청 (이후 신청 불가)
- 나. 이용방법: 수강 학기 중 연세대학교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가능
- 출입증발급: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바코드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
 - 학생증발급: 1층 행정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제출
- 다. 2주차 수업 시 각 과정별 책임강사님 통해 교부 (재발급 불가)
- 라. 이용방법: ※ 타인 노출 절대 금지

휴대전화	노트북	학술정보원
Yonsei 선택 EAP방식->TTLS 선택 CA인증서->인증안함 선택	Yonsei_Web 선택 Agent 다운로드 및 설치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	https://library.yonsei.ac.kr/ 접속
ID: 바코드 상단번호 PW: 생년월일8자리	ID: 바코드 상단번호 PW: 생년월일8자리	ID: 바코드 상단번호 PW: 생년월일8자리ab!

■ 정기주차 신청

- 가. 신청기간: 첫 수업일에 발급 신청 (이후 신청 불가)
- 나. 개강 첫 주 수업일에는 확인증 제출 시 2,000원 납부
- 다. 정기 주차권 구입
- 1) 이용금액: 학기권(3~8월/9~2월) 100,000원
 - 2) 제출서류:

기본제출서류	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직계가족차량	기본제출서류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
법인/리스차량	기본제출서류외 사업자등록증, 리스계약서, 재직증명서 추가제출

- 3) 구입장소: 연세대학교 정문 공학원 지하2층 주차관리실(B207)
- 4) 운영시간: 평일 09:00~23:00, 토요일 09:00~16:00
- 5) 문의: 02-2123-2177, 2178

■ 수강료 환불

가. 신청방법 : 환불 신청 후 환불까지 2주 소요

- 1) 미래교육원 웹사이트 > 마이페이지 > 수강료 반환 신청
- 2) 미래교육원 행정팀 > 환불신청서 작성

나. 수강료 반환 규정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)

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 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않음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본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수강과 관련하여 금전거래, 수강료대납, 투자유도, 판매행위, 성희롱, 저작권법위반, 불법촬영 등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. 만약, 어떤 이유에서라도 위와 관련된 사항에 가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,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(행위자 본인)에게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